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 안 번 호 3541

발의연월일: 2024. 9. 2.

발 의 자: 오세희 · 김문수 · 이기헌

김남근 • 박 정 • 염태영

박홍근 • 민병덕 • 박정현

서영교 • 이용선 • 김남희

박주민 • 이워택 • 황정아

김용만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조(「기술보증기금법」의 개정)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제4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제5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7조(「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제4조(결격사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	
도사가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삭 제></u>
아니한 사람	
3. • 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기술보증기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임원의 해임) 중소벤처기	제23조(임원의 해임)
업부장관은 기금의 임원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u><삭 제></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② (생 략)	설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	3
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2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	<u><삭 제></u>
<u>지 아니한 사람</u>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①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②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	
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원(주식회사 및 제66조에	2
따라 설립된 법인은 임원, 유	
한회사 • 유한책임회사는 사원	
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차목과 카목은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업무집행자에게만 적용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	<u><삭 제></u>
지 아니한 사람	
다. ~ 자. (생 략)	다. ~ 자.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①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생략)
- 2. 임원(주식회사 및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임원,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차목과 카목은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또는 업무집행자에게만 적용한다.

가. (생략)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

지 아니한 사람

다. ~ 카. (생 략)

- 3. ~ 5. (생 략)
- ③ ~ ⑤ (생 략)

(2)
1. (현행과 같음)
2
가. (현행과 같음)
<u><</u> 삭 제>
다. ~ 카.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제54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2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일 것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	<u><삭 제></u>
지 아니한 자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	제5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1. 피성년후견인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임원의 임면 등) ① ~ ③	제15조(임원의 임면 등)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는 재단의 임원	4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 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u><</u>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